

##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2차 채용 재공고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 1. 채용 개요

고용형태	채용인원	소속	자격기준	보수기준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19명	제주시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을 소지한 자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기준 포괄 시급 - 4대보험 및 퇴직금 적립 - 각종 수당 내부지침에 따름
	28명	서귀포시 종합재가센터		

※ 소속기관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가. 응시자격(공고일 기준)

응시자격	
(공통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li> <li>거주지 :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거나, 주민등록 주소를 두었던 기간(말소 및 거주 불명기간 제외)이 총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li> <li>성별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li> <li>■ 임용예정일로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li> <li>■ 인사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로 공공기관 채용이 취소된 적이 없는 자</li> <li>■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li> </ul> <table border="1" data-bbox="343 436 1284 672"> <thead> <tr> <th>결격사유</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td> <td>[참고1]</td> </tr> <tr> <td>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td> <td></td> </tr> <tr> <td>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td> <td></td> </tr> <tr> <td>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조항에 위배 되는 자는 임용이 확정된 후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li> </ul>	결격사유	비고	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참고1]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결격사유	비고										
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참고1]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b>(필수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li> <li>■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li> <li>■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 수료한 장애인활동지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대사항 : 장기요양 관련 사업기관 1년 이상 근무자(동점자 우선 합격)</li> <li>: 장애인활동보조 관련 사업기관 1년 이상 근무자(동점자 우선 합격)</li> </ul> </li> </ul>										
<p>※ 재가장기요양기관 경력인정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노인요양시설 사업</li> <li>2. 「노인복지법」 제28조제1항제1호(방문요양), 2호(주야간보호), 3호(단기보호), 4호(방문목욕), 5호(그 밖의 서비스 중 방문간호) 및 노인요양시설 사업</li> </ol> <p>※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경력인정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활동지원기관에서 제3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사업 경험</li> </ol>											

## 나. 가점기준(우대사항)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대사항(동점자 발생시 우선 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요양 관련 사업기관 1년 이상 근무자</li> <li>-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사업기관 1년 이상 근무자</li> </ul> </li> </ul>

### 3. 직무내용

- '제주가치 통합돌봄'서비스(긴급, 틈새) 제공(재가방문서비스 제공)
  - 가사활동지원
  - 신체활동지원
  - 일상지원 등
- 국가형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제주가치 통합돌봄서비스(재가방문서비스) 내용과 동일

### 4. 시험단계 및 채용절차

가. 시험단계: 서류전형 → 면접시험

나. 채용절차



※ 전(前) 단계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단계의 응시자격 부여

### 5. 시험세부내용

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1) 채용공고

- 공고기간 : 2024년 3월 12일(화) ~ 2024년 3월 18일(월)
- 공고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및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

2)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년 3월 12일(화) ~ 2024년 3월 18일(월) 12: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jpcare@jeju.pass.or.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조로 1254, 1층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05, 3층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
- 응시직위 : 제주가치통합돌봄 및 국가형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인력
  - 제출된 서류는 지원 자격의 적격 여부 및 서류심사를 위해 사용
  - 채용 형식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격증(요양보호사) 또는 교육수료증(장애인활동지원사) 사본 등

## 나. 서류전형

### 1) 일자/장소 및 시험위원

- 서류전형 : 2024년 3월 19일(화)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시험위원 : 2명(내부위원)

### 2) 심사방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응시 자격의 적격 여부 결정
  - ※ 응시 자격 부적격, 제출서류 미비자를 제외한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 3) 합격자 결정

평가항목	합격자 결정 기준	비 고
· 응시자격 적격/부적격 여부	· 채용분야 응시자격이 "적격"인 자	

### 4)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대상자 통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년 3월 20일(수)
- 통지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 다. 면접시험

### 1) 일자/장소 및 시험위원

- 일 자 : 2024년 3월 22일(금) ※시간 추후 통보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면접위원 : 3명(내·외부위원)

### 2) 심사방법

면접평가요소					합 계
①공적 책무성 등	②인성 및 직업관	③이해력· 지식수준	④의사발표 정확성 및 논리성	⑤창의성 및 전문성	
20	20	20	20	20	100

※ 면접전형 결과 시험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반영하고, 나머지는 절사

## 6. 채용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024년 3월 12일(화) ~ 3월 18일(월)	내·외부홈페이지 공고
지원서접수	2024년 3월 12일(화) ~ 3월 18일(월) 12:00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2024년 3월 19일(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안내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4년 3월 20일(수)	
면접시험	2024년 3월 22일(금)	
최종합격자발표	2024년 3월 25일(월)	

※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으로 채용단계별 세부 채용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 단계별 일정 공고시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

## 7.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응시자 공통	응시원서	필수제출 [서식 1]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필수제출 [서식 2]
	자격증 사본(요양보호사) 또는 교육수료증 사본(장애인활동지원사)	필수제출
	주민등록 초본	필수제출 공고일 이후 발행, 주소변동 기재, 병역사항 포함 (등본 제출 시 인정안됨)
	재직/경력증명서	해당자(우대사항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해당자(우대사항 확인)
최종 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증명서</li> <li>■ 가족관계증명서</li> <li>■ 주민등록등본(13자리 모두 표시)</li> <li>■ 일반채용신체검사서</li> <li>■ 반명함 사진 1부(3*4cm)</li> <li>■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li> <li>■ 기타 서류는 별도 안내</li> </ul>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검사 결과로 채용신체 검사를 대신할 수 있음

※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 시 합격 및 임용 취소

※ 경력증명서 외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함

※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검사 결과로 채용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음

## 8.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4년 3월 12일(화) ~ 2024년 3월 18일(월) 12: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jpcare@jeju.pass.or.kr)  
(※ 방문접수는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주 소 :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제주시 애조로 1254, 1층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05, 3층

- 문의전화 : 제주사회서비스원 돌봄지원팀(070-8805-4994)

## 9. 최종합격자 결정 및 통지

### 가.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

구분	면접 평정요소	합격자 결정 기준
공통 사항	① 공적책임성, 사업의 목적성 부합여부 ② 인성 및 직업관 ③ 이해력 및 지식수준 ④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 창의성 및 전문성	· 모든 시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후 <b>60점 이상</b> 득점자 중, <b>고득점자 순</b>  【동점자 처리】 - 장기요양 관련 사업기관 1년 이상 근무자 -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사업기관 1년 이상 근무자 (동점자 발생시 우선 합격) ※ 면접전형 결과 시험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반영하고, 나머지는 절사

### 나. 최종 합격자 통지

- 합격자 발표 : 2024년 3월 25일(월) 예정
- 통지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 ※ 합격자 발표 이후 업무 관련 교육, 회의 등 개최될 시 임용 전이라도 참석 필수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범죄경력 조회 후 결격사유 없을시 임용 예정

## 10. 응시자 권리보호 제도 안내

### 가.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예비합격자는 비공개)

- 운영목적: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임용 후 중도 퇴사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결원 해소
- 운영규모: 최종 합격자 인원의 2배수
- 유효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나.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접수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접수방법 : " 채용결과 이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서명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돌봄지원팀으로 제출
-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답변 처리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 다. 채용서류 반환

- 운영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청구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 접수방법 :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서명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돌봄지원팀으로 제출
- 반환방법 : 입사지원서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 11. 기타사항

-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사회서비스원·제주도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므로 수

시 확인 바랍니다.

- 나.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채용 절차는 채용 일정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으며, 발견 될시 전형별 단계에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 채용 비리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 바.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통 등으로 발생 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 채용 결과 책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자. 최종 합격자의 근무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임용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차. 임용 예정일 이후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타. 채용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파.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하. 그 밖에 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돌봄지원팀 (070-8805-49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정  
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1] 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서 규정한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